

【 9 】 양주시민원모니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제출연월일 : 2004년 월 일
제출자 : 양주시장

1. 제안이유

- 시승격으로 읍면동이 7개에서 11개로 증가하였고, 급격한 도시화로 다양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시정에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민원모니터의 수를 150명한도로 늘려 시정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

2. 주요골자

가. 민원모니터의 수를 30명이상 50명이하에서 150명이하로 늘림
(안 제4조제2항)

나.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계속 연임이 가능하도록 함 (안 제5조제1항)

양주시조례 제 호

양주시민원모니터운영조례증개정조례안

양주시민원모니터운영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중 “30명이상 50명이하”를 “150명이하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중 “1회에 한하여 연임”을 “연임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 표

현 행	개 정
제4조(위촉) ① (생략) ② 민원모니터의 위촉인원은 <u>30명이상</u> <u>50명이하로</u> 한다.	제4조(위촉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<u>150명</u> <u>이하로</u> ---.
제5조(위촉기간) ① 민원모니터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<u>1회에 한하여</u> 연임할 수 있다.	제5조(위촉기간) ①----- ----- <u>연임</u> -----.

양주시민원모니터운영조례

양주시민원모니터운영조례

제정 2003. 10. 19 조례 제53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참여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민원모니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“민원모니터”라 함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중에서 시장의 위촉을 받아 시정 발전사항 및 불편사항 등을 제보하는 자를 말한다.

제3조(다른 법규와의 관계) 민원모니터의 제보 및 제보사항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(위촉) ① 민원모니터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자가 일부지역으로 편중되었거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지역안배를 고려하여 읍·면·동장 또는 읍·면·동 주민자치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.

② 민원모니터의 위촉인원은 30명이상 50명이하로 한다.

제5조(위촉기간) ① 민원모니터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.

② 민원모니터의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읍·면·동장 또는 주민자치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충원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위촉기간은 해촉된 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제6조(해촉) ① 시장은 민원모니터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.

1. 질병, 장기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타 시군으로 이주한 경우
3. 민원모니터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
4. 본인이 해촉을 요구하는 경우

제7조(제보대상) ① 민원모니터가 제보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.

1. 생활주변 불편사항

양주시민원모니터운영조례

2. 위법·부당한 행정사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

3. 미담수범사례 등

②제보사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8조(신분증) ①시장은 민원모니터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.

②신분증에는 발급번호·성명·주소·주민등록번호·유효기간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.

③신분증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9조(실비보상 등) ①민원모니터가 제보한 사항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.

③민원모니터가 시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하거나 회의등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0조(제보자 보호) 민원모니터의 제보사항을 처리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을 제외한 모든 경우에 대하여 제보자의 개인정보가 노출 또는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1. 미담수범사례 및 정책의 대안

2. 개인·단체 행정기관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의 제보

3. 기타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거나 제보자가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양주군민원모니터운영조례에 의한 민원모니터의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.

양주시민원모니터운영조례

[별표]

민원모니터 제보사항 보상금 지급기준(제9조제2항관련)

(단위 : 원)

제보사항	처리사안 보상금액	보상금액
주민불편사항	단순처리 및 내부종결	
	채택결정(현지조치 및 예산수반 등)	10,000
미답수법사례	사례전파 필요성 및 효과성	10,000
	내부종결	
제도개선사항	관련부서 이송(내부종결 제외)	20,000

비고 : "내부종결"이란 내용의 불명확, 개인적이며 사적인 내용, 평범한 사항의 미답사례, 이미 시행되었거나 계획중에 있는 사항을 말한다.